

이사회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화승알앤에이(이하 "회사")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권 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장 구 성

제 4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 5조 (의 장)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 직급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의 재임연수를 따져 최장 재임자로 결정한다.

제 3장 회 의

제 6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 7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 등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질서유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장 부의 사항

제 1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자본의 감소

- (5) 주식의 소각
- (6) 주식배당의 결의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임대, 경영위임 등
-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0) 이사의 보수한도
-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
- (1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주식에 관한 사항

- (1)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3) 주식액면미달
- (4) 주식의 분할, 합병
-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6)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의 결정

3. 사채에 관한 사항

- (1) 일반사채의 발행
- (2)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3) 신종사채의 발행

4.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3) 이사의 겸임 등
- (4) 준비금의 자본전입
- (5) 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
- (7) 청구금액이 자기자본 100분의 5이상인 소송에 대한 화해
- (8) 투자에 관한 사항
 - 1)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대한 결정
 - 2)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의 철수에 대한 결정
 - 3)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혹은 처분에 대한 결정

- 4)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대한 결정
- (9)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 1) 자기자본의 1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만기 1년이내의 단기 자금의 차입에 대한 결정(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 2) 자기자본의 5%이상 채무의 인수 및 면제에 대한 결정
 - 3) 자기자본의 5%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 (담보제공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보증에서 입찰, 계약, 하자,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 보증은 제외함).
 - 4)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전대여 (타인에 대한 선급금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대한 결정
- (10)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 1) 직전 사업년도말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중단 또는 정지, 거래중단 또는 제품의 수거나 파기 등에 대한 결정
 - 2) 직전 사업년도말 매출액의 10%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의 중단 또는 폐업의 결정
- (11) 기타 증권거래소 공시 등 외부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의결 및 의사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1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제10조에 기재된 사항 등 이사회회의 부의 또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이 같은 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정관의 제한이나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결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정을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는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3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5조 (간사 등)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도 있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6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